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11일, 한창민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 2. 10.)

제2차 전체회의(2026.2.1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창민의원)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권력의 무제한적인 행사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68조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현행법 규정에 대해,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외면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고,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소원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며, 입법,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6헌마33)을 한 바 있으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차이가 지속되고 있어 입법적으로 명확한 해결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재판소원을 금지한 부분을 삭제하여 재판소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오던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였으므로 전

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함.

4. 대체토론의 요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 대상에는 법원의 재판이 제외되어 있으나,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기본권 구제의 공백 방지 및 기본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심사에 이어 제4심의 법원으로 기능하게 되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침해할 수 있고, 소송 남발로 인한 사법체계의 비효율, 소송 지연에 따른 국민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됨.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 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